

# 최초교육 이수 관련 주요 Q & A 집

2017. 2.



## Q & A 안 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전면 개정·시행(2014. 5. 23.)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제도가 변경되고, 그에 따른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3년이 유예되는 등 교육훈련 대상 및 이수시기에 많은 궁금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초교육 이수 유예기간 만료일(2017. 5. 22.)이 도래됨에 따라 최초교육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도를 높여 2017.5.22일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미이수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결과에 따른 최초교육 이수 관련 주요 Q&A집을 안내하오니 교육훈련 이수 및 안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초교육 이수관련 주요 Q&A집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팀 (02-3416-943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팝업창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Q 1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 2.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구 분	교육·훈련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로 참여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70시간 이상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1. 유예대상자 :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기술자

2. 교육이수기한 유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2014. 5. 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받아야 한다.(교육이수기한 : 2017. 5. 22.)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14. 5.23 ) 부칙 제10조제2항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시행(2015. 6. 30.) 당시 개정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시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교육이수기한 : 2018.6.29)

※ 근거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15.6.30) 부칙 제13조제1항

**Q 3****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건설기술자의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제20조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영 별표1의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참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Q 4****업무수행 전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할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로서 최초로 해당 업무(설계·시공 등 건설기술관련 업무,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수행 전에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 5****최초교육 유예대상자 중 2017년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을 받아야 할 건설기술자**

○ Q2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14. 5. 23.)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초교육 유예대상자 중 2017년 5월 22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할 건설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교육이수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기한이 2017. 5. 22.까지인 건설기술자 】**

1. 2014. 5. 23. 당시 종전 법령에 따른 최초교육 미이수자
2. 2014. 5. 23. 이후에 건설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으로서(2014.5.22. 이전에 신고된 자 포함) 2014. 5. 22. 이전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 품질관리 업무는 2010.12.30.(품질관리 최초교육 시행일) 이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Q 6****최초교육 유예대상자 중 2018년 6월 29일까지 최초교육을 받아야 할 건설기술자**

○ Q2와 관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15.6.30)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최초교육 유예대상자 중 2018년 6월 29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할 건설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교육이수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기한이 2018. 6. 29.까지인 건설기술자 】**

1. 2014. 5. 23. ~ 2015. 6. 30. 기간 동안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최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Q 7****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비용 부담 주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8****법령에 정해진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제재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법령에 정해진 교육이수기한 이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처분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부과됩니다.

※ 과태료 처분권자

- 시·도지사 : 종합 및 전문공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지방국토관리청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자 및 기술자는 제외)

※ 과태료 처분 대상의 교육종류 :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

**Q9****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최초교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인정됩니다.

1. 최초교육 인정 :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70시간 이상인 경우 설계시공분야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2. 승급교육 인정 :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설계시공분야의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동 교육훈련은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이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국토부 고시 별표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별첨 2 참조)

**Q 10****특급기술자 학점이수로 계속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7에 따라 특급기술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90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계시공 분야의 계속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학점이수신고는 고시 별지11호 서식으로 우리협회로 신고)

※ 학점이수로는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점인정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 및 인정내용 등에 대하여는 국토부 고시 별표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3 참조)



**Q 11****교육훈련의 면제기준과 최초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교육훈련의 면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의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의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 이 경우 해당분야의 교육이수시간을 전부 이수하였을 경우에 적용됩니다.(예, 건설사업관리 특급기술자가 최초교육 4주(기본 2주, 전문 2주)를 받았을 경우에 설계시공의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만, 최초교육 2주(기본 1주, 전문 1주)만 받았을 경우에는 설계시공의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교육훈련의 연기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및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연기 신청은 고시 제10호 서식으로 우리협회로 신고

- 교육훈련의 연기는 계속교육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교육은 교육훈련 연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교육이수시기 경과조치에 따른 '17.5.22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도 해외출장,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기준상 교육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Q 12****최초교육 유예대상자가 건설업계에서 퇴직하였거나 비건설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도 유예기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관련업체(발주청 포함)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수기간이 2017.5.22.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가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설업계에 종사하지 않을 건설기술자는 교육을 이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유예대상자가 현재 시점에서 건설업계에서 퇴직하고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에 건설업계에 다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인 “업무수행 전”에만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건설업계의 종사여부 및 퇴직여부는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확인됨을 알려드리니 입사 및 퇴직 신고 사항이 있는 건설기술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3** **건설기술자가 유예기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실제 부과하는 지**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기한 이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유예기간 만료일(2017.5.2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까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Q 14** **설계시공의 최초교육에서 본사 경력도 건설기술 관련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최초교육을 “건설기술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관련 업무”라 함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사 경력은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 관련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최초교육 이수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15 인터넷 교육 및 출장교육도 법정교육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교육기관은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피교육자의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교육 및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법정교육(최초교육 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7.5.22.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교육 및 출장교육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교육에 대한 교육비, 환급여부 등 자세한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3월 개설예정), 호남건설기술교육원(3월 개설예정)

## Q 16 교육대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예기간까지 교육수강이 가능한 지

○ 최근 국토부와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증설, 인터넷 원격교육 도입 등 최초교육 유예대상자들이 유예기간 만료일(2017.5.22.)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교육기관별로 교육과정 증설 내용, 출장교육 및 원격교육 일정 등은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교육대상자 및 소속업체들은 수시로 교육기관에 확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17 협회 회원 탈퇴시 교육훈련 의무가 면제되는 지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관련업체(발주청 포함)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신고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건설기술자가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퇴를 하시면 경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Q 18** 교육이수시기 등 최초교육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우리협회에서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ocea.or.kr>) 메뉴 [교육정보 → 교육훈련 이수현황]에서 건설기술자 개인별, 소속업체의 기술자별 최초교육 대상여부, 교육이수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미이수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Q 19** 최초교육 등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 대행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4항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교육기관 현황은 별첨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시행령 별표3]

### 1. 교육·훈련의 종류

- 가.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나.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 2.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구 분	교육·훈련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로 참여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70시간 이상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비고: 가목3)나)의 "책임기술자"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란 전문분야별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 가. 건설기술자(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만 해당한다)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제2호나목1), 다목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제2호나목2), 다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 나. 건설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3), 나목3) 및 다목3)의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다만, 제2호나목3) 및 다목3)의 경우에는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만 인정한다.
- 다.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2호가목2), 나목2) 및 다목2)의 전문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라.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 가. 내용: 건설기술자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 나. 방법: 법 제20조제4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 분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5. 그 밖에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첨 2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과 그 밖의 다른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범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25호(2016.9.20) 별표6>

분야	근거 법령	비고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중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하수도법」 제67조	
안전관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전기·전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광업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	
도시·교통, 토목, 환경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5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에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 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비 고

1. 상기한 내용에 따른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70시간 이상인 경우 영 별표 3 제2호 가목 1)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같은 표 제2호 가목 2)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3.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4.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2)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산하는 교육시간은 2011년 6월 17일(고시 시행일)이후 이수한 교육시간으로 한다.

**별첨 3**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학점인정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73호(2016.7.12) 별표7 >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 최고학점 (3년 기준)
	교육훈련 종류	인정사항			
수강 교육 (원격 교육 포함)	학위과정	1.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학점	90학점
	외국어과정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60학점
	기타 교육과정	3.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영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포함)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육이나 영 제42조제1항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2	수강시간	90학점
무 형 식 교 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건	90학점
	강의 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90학점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건	90학점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건	75학점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건	90학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건	60학점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30학점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건	30학점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참여시간	40학점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0~30	건	90학점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60학점

비 고

수강교육에서 기타교육과정 인정사항 중 학회는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사단 법인에 한한다.



## 별첨 4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기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73호(2016.7.12) >

### ▣ 종합교육기관 (6개 기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교육기관 명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교육기술분야
건설기술교육원	본원	인천 만수동	(032)463-4901	모든 분야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분원	서울 강남역	(02) 565-0162	
	분원	서울 신설동역	(02) 585-8848	
건설산업교육원	본원	서울 양재역	(02) 575-7123	
	분원	서울 건국대	(02) 456-6123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본원	광주 동림동	(062)513-0116	
	분원	전북 전주시	(063)214-6600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본원	경북 영천시	1544-7660	
	분원	부산 온천동		
건설공제조합건설경영연수원	충북 충주시	(043)850-4500	edu.cgbest.co.kr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	충북 음성군	(043)879-2424	www.kscfcac.co.kr	

### ▣ 전문교육기관 (7개 기관, 전문교육과정만 개설)

교육기관 명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교육기술분야
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 고양시	(031)910-4061	www.kistec.or.kr	안전관리
공간정보산업협회	서울 신길동	(02)2670-7136	www.kasm.or.kr	측량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전민동	(042)870-7206	www.kwater.or.kr/edu	물관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 가산동	(02)3415-8742	www.kcl.re.kr	품질관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서울 도곡동	(02)3460-8662	www.ekacem.or.kr	건설사업관리
한국건설관리협회	서울 방배동	(02) 585-4713	www.cmak.or.kr	건설사업관리
한국기술사회	서울 역삼동	(02) 2098-7133	www.kpea.or.kr	건설사업관리

## 별첨 5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조문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국토부 고시)

### ▣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 ▣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별표1(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3조(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 (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건설기술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2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 제2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 ▣ 교육훈련 이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령 (시행 `14.5.23) >

**제10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에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

< 국토부 고시 >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 기준(시행 `14.5.23)

**제2조(교육·훈련 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된 사람으로서 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어 최초교육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영 부칙 제10조제2항과 같이 최초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시행 `15.6.30)

**제13조(교육·훈련 이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개정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시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 ▣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교육·훈련의 시기)** ① 건설기술자는 영 별표 3 제2호 가목 1), 나목 1) 및 다목 1)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이하 “최초교육”이라 한다)을 해당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 1)의 “건설기술 관련 업무”라 함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3 제2호 나목 3) 또는 다목 3)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같은 호 가목 3)의 교육이수기한은 해당 전문교육 종료일 이후 가목 3)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26조(교육·훈련의 연기)** ① 영 별표 3 제3호 라목에 따른 교육·훈련의 연기는 같은 표 제2호 가목 3), 나목 3)·4) 및 다목 3)의 전문교육(이하 “계속교육”이라 함)에 한하며, 교육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 영 제11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출장교육 운영)** ① 교육기관은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협회(대한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소규모 업체로 구성된 건설관련협회를 말하여 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요청기관이 마련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원격교육 운영)** ① 교육기관은 피교육자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1에 따른 원격교육·훈련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